

瑞山市政策諮問教授團設置 및 運營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總務委員會

2000. 6. 9

1. 審 查 經 過

- 가. 發議日字 : 2000. 5. 30
- 나. 發議者 : 任德宰 議員外 7人
- 다. 回附日字 : 2000. 5. 31
- 라. 上程日字 : 2000. 6. 9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任德宰 議員)

가. 提案理由

- 현사회가 세계화에 따른 전문성과 정보화시대로 변화함에 있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을 위한 지식·정보 산업의 발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운영·전문적인 지식·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목적을 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대한 기능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자문교수단은 단장,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 부단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범위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 자문교수단의 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요구할시 적극협조토록 함(안 제7조, 제8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 운영하므로써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교수단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항임.
-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54 호
의 결	2000. . .
년 월 일	(제 회)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발 의 자	임덕재 의원외 7인
발의년월일	2000. 5 . 30 .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54
----------	-----

발의년월일: 2000. 5. 30.
발 의 자: 임덕재 의원외 7인

1. 제정이유

- 현 사회가 국제화, 정보시대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서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음.
- 지방자치행정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의 지식산업, 정보산업 발전 전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본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 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수단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책자문교수단설치운영목적은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심의를 통해 자문에 응하기 위함(안 제1조).

나. 정책자문교수단의 기능은

-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함(안 제2조).

다. 자문교수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호선하고
-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자격 범위는
 -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와
 - 국책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인 연구원
 - 그밖에 위와 같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전문가로함(안 제3조)

라.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에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포함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4조).

마. 단장은 자문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함(안 제5조).

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상 필요시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안 제6조).

사. 자문교수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국장이 개최함(안 제7조).

아.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8조).

자. 시장은 자문교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권고·심의를 통해 시정의 자문에 응하는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이하 “자문교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교수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교수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전문가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에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자문교수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국장이 개최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시장은 자문교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자문교수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